

준강간 손해배상 5,000만 원

## 1. 사안의 개요

피해자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집에서 자고 있던 중 지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뺨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안으로 형사소송에서 징역 3년(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, 7년간 취업제한) 확정.

## 2. 관련 법리

준강간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되므로,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와 피고의 나이, 준강간 등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및 정도,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, 범행 후의 정황(부모를 통한 합의강요 등 2차 가해)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들을 참작하면,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5,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.